

센텀 아스트룸 SK VIEW 입주자모집공고



※ 『센텀 아스트룸 SK VIEW』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2022.04.21.) 전문내용 일부 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구분 | | 옵션 | | |
|---|-------|---------------|------------------------------------|-------------------------------------|
| | | 기존 | 정정 | |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3) 개별옵션 및 고급화 품목 금액 | 개별옵션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전자 / Objet 컴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전자 / Objet 컴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 |
| | 주방고급화 | 주방가구 | 국산 주방가구+상부장 글라스 도어 마감+맞춤형 냉장고장+키큰장 | 국산 주방가구+상부장 글라스 도어 마감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센텀 아스트룸 SK VIEW 건본주택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s://www.ca-sk.co.kr>)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관람은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명록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심사 및 공급계약 체결시 아래의 계약일정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건본주택 운영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T. 051-784-8801)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전화 등 청약상담 과정에서 상담고객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을 위한 자세한 방문 일정은 아파트 홈페이지(<https://www.ca-sk.co.kr>)를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1.(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만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수도권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1.)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 :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일부지역(7개소)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및 1순위 중 우선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로 청약 및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청약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청약신청자
 - 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다.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a-sk.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5.12.)부터 아래 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됨 (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사후무순위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및 세대원의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라며, 청약 유형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를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센텀 아스트림 SK VIEW'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59A,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니,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 | 해당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한 자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자) | | | |
| 일 정 | 2022.05.02.(월) | 2022.05.03.(화) | 2022.05.04.(수) | 2022.05.06.(금) | 2022.05.12.(목) | 2022.05.24.(화) ~ 2022.05.29.(일)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17:30) | 인터넷 청약 (09:00~17:30) | 인터넷 청약 (09:00~17:30) | 인터넷 청약 (09:00~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텀 아스트롬 SK VIEW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텀 아스트롬 SK VIEW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21104(2022.04.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34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8층, 8개동 총 750세대 [조합 168세대(보류지1세대 포함), 임대 38 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544세대
[특별공급 286세대(일반[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54세대, 신혼부부 108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2000230 | 01 | 059.9930A | 59A | 59.9930 | 19.7159 | 79.7089 | 41.4231 | 121.1320 | 27.9526 | 133 | 13 | 13 | 26 | 3 | 13 | 68 | 65 | 7 |
| | | 02 | 059.9761B | 59B | 59.9761 | 20.5684 | 80.5445 | 41.4115 | 121.9560 | 28.2456 | 86 | 9 | 9 | 17 | 3 | 9 | 47 | 39 | 4 |
| | | 03 | 074.7150A | 74A | 74.7150 | 24.0195 | 98.7345 | 51.5883 | 150.3228 | 34.6245 | 108 | 11 | 11 | 21 | 3 | 11 | 57 | 51 | 6 |
| | | 04 | 074.7417B | 74B | 74.7417 | 24.0039 | 98.7456 | 51.6068 | 150.3524 | 34.6284 | 93 | 9 | 9 | 19 | 3 | 9 | 49 | 44 | 4 |
| | | 05 | 084.9807A | 84A | 84.9807 | 26.8496 | 111.8303 | 58.6765 | 170.5068 | 39.2170 | 73 | 7 | 7 | 15 | 2 | 7 | 38 | 35 | 8 |
| | | 06 | 084.9853B | 84B | 84.9853 | 27.4856 | 112.4709 | 58.6796 | 171.1505 | 39.4417 | 51 | 5 | 5 | 10 | 2 | 5 | 27 | 24 | 3 |
| | 합 계 | | | | | | | | | | | 544 | 54 | 54 | 108 | 16 | 54 | 286 | 258 |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32세대)는 일반분양 총공급세대(54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건분주택, 건분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다음 소수점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59.9930A | 059.9761B | 074.7150A | 074.7417B | 084.9807A | 084.9853B |
| 건분주택등 약식표기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약식 표기 | 동·라인 | 층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 지정일 |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022.09.19. | 2023.01.17. | 2023.04.17. | 2023.07.17. | 2023.10.17. | 2024.02.19. | | | |
| 59A | 104동 5,6호 106동 1호 107동 1,2,3,4호 | 1층 | 6 | 141,050,000 | 261,950,000 | 403,000,000 | 30,000,000 | 1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120,900,000 | |
| | | 2층 | 7 | 142,100,000 | 263,900,000 | 406,000,000 | 30,000,000 | 1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40,600,000 | 121,800,000 |
| | | 3층 | 7 | 145,950,000 | 271,050,000 | 417,000,000 | 30,000,000 | 1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125,100,000 |
| | | 4층 | 7 | 150,500,000 | 279,500,000 | 430,000,000 | 30,000,000 | 1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43,000,000 | 129,000,000 |
| | | 5~9층 | 35 | 153,650,000 | 285,350,000 | 439,000,000 | 30,000,000 | 1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43,900,000 | 131,700,000 |
| | | 10~19층 | 48 | 156,800,000 | 291,200,000 | 448,000,000 | 30,000,000 | 1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134,400,000 |
| | | 20층이상 | 23 | 158,550,000 | 294,450,000 | 453,000,000 | 30,000,000 | 1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45,300,000 | 135,900,000 |
| 59B | 101동 3,4호 106동 2,3호 | 1층 | 2 | 139,650,000 | 259,350,000 | 399,000,000 | 30,000,000 | 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119,700,000 | |
| | | 2층 | 4 | 140,350,000 | 260,650,000 | 401,000,000 | 30,000,000 | 1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120,300,000 | |
| | | 3층 | 4 | 144,550,000 | 268,450,000 | 413,000,000 | 30,000,000 | 1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41,300,000 | 123,900,000 | |
| | | 4층 | 4 | 149,100,000 | 276,900,000 | 426,000,000 | 30,000,000 | 1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127,800,000 | |
| | | 5~9층 | 20 | 152,250,000 | 282,750,000 | 435,000,000 | 30,000,000 | 1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 | | 10~19층 | 40 | 155,400,000 | 288,600,000 | 444,000,000 | 30,000,000 | 1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133,200,000 | |
| | | 20층이상 | 12 | 156,800,000 | 291,200,000 | 448,000,000 | 30,000,000 | 1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44,800,000 | 134,400,000 |
| 74A | 101동 1,2호 103동 1,2호 104동 1,2호 | 1층 | 5 | 178,500,000 | 331,500,000 | 510,000,000 | 30,000,000 | 2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153,000,000 | |
| | | 2층 | 6 | 179,550,000 | 333,450,000 | 513,000,000 | 30,000,000 | 2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53,900,000 | |
| | | 3층 | 6 | 184,450,000 | 342,550,000 | 527,000,000 | 30,000,000 | 2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52,700,000 | 158,100,000 | |
| | | 4층 | 6 | 190,400,000 | 353,600,000 | 544,000,000 | 30,000,000 | 2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54,400,000 | 163,200,000 | |
| | | 5~9층 | 29 | 194,250,000 | 360,750,000 | 555,000,000 | 30,000,000 | 2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55,500,000 | 166,500,000 | |
| | | 10~19층 | 46 | 198,100,000 | 367,900,000 | 566,000,000 | 30,000,000 | 2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56,600,000 | 169,800,000 | |
| | | 20층이상 | 10 | 200,200,000 | 371,800,000 | 572,000,000 | 30,000,000 | 2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57,200,000 | 171,600,000 | |
| 74B | 103동 3,4호 104동 3,4호 | 1층 | 3 | 176,750,000 | 328,250,000 | 505,000,000 | 30,000,000 | 2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50,500,000 | 151,500,000 | |
| | | 2층 | 4 | 177,800,000 | 330,200,000 | 508,000,000 | 30,000,000 | 2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50,800,000 | 152,400,000 | |
| | | 3층 | 4 | 182,700,000 | 339,300,000 | 522,000,000 | 30,000,000 | 2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52,200,000 | 156,600,000 | |
| | | 4층 | 4 | 188,300,000 | 349,700,000 | 538,000,000 | 30,000,000 | 23,800,000 | 53,800,000 | 53,800,000 | 53,800,000 | 53,800,000 | 53,800,000 | 53,800,000 | 53,800,000 | 161,400,000 | |
| | | 5~9층 | 20 | 192,500,000 | 357,500,000 | 550,000,000 | 30,000,000 | 2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 | | 10~19층 | 40 | 196,350,000 | 364,650,000 | 561,000,000 | 30,000,000 | 2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56,100,000 | 168,300,000 | |
| | | 20층이상 | 18 | 198,450,000 | 368,550,000 | 567,000,000 | 30,000,000 | 2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56,700,000 | 170,100,000 | |
| 84A | 102동 1,2,3,4호 105동 1,2,3,4호 | 1층 | 8 | 206,150,000 | 382,850,000 | 589,000,000 | 30,000,000 | 2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176,700,000 | |
| | | 2층 | 8 | 207,200,000 | 384,800,000 | 592,000,000 | 30,000,000 | 2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59,200,000 | 177,600,000 | |
| | | 3층 | 8 | 213,150,000 | 395,850,000 | 609,000,000 | 30,000,000 | 3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
| | | 4층 | 8 | 219,800,000 | 408,200,000 | 628,000,000 | 30,000,000 | 3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62,800,000 | 188,400,000 | |
| | | 5~9층 | 27 | 224,350,000 | 416,650,000 | 641,000,000 | 30,000,000 | 3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64,100,000 | 192,300,000 | |
| | | 10~19층 | 11 | 228,900,000 | 425,100,000 | 654,000,000 | 30,000,000 | 3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65,400,000 | 196,200,000 | |
| | | 20층이상 | 3 | 231,350,000 | 429,650,000 | 661,000,000 | 30,000,000 | 36,100,000 | 66,100,000 | 66,100,000 | 66,100,000 | 66,100,000 | 66,100,000 | 66,100,000 | 66,100,000 | 198,300,000 | |

| | | | | | | | | | | | | | | | | |
|-----|---------|--------|----|-------------|-------------|-------------|------------|------------|------------|------------|------------|------------|------------|------------|-------------|-------------|
| 84B | 101동 5호 | 1층 | 3 | 204,400,000 | 379,600,000 | 584,000,000 | 30,000,000 | 2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58,400,000 | 175,200,000 | |
| | | 2층 | 3 | 205,450,000 | 381,550,000 | 587,000,000 | 30,000,000 | 2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58,700,000 | 176,100,000 |
| | 103동 5호 | 3층 | 3 | 211,050,000 | 391,950,000 | 603,000,000 | 30,000,000 | 3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60,300,000 | 180,900,000 |
| | | 4층 | 3 | 218,050,000 | 404,950,000 | 623,000,000 | 30,000,000 | 3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62,300,000 | 186,900,000 |
| | 106동 4호 | 5~9층 | 15 | 222,600,000 | 413,400,000 | 636,000,000 | 30,000,000 | 3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63,600,000 | 190,800,000 |
| | | 10~19층 | 24 | 227,150,000 | 421,850,000 | 649,000,000 | 30,000,000 | 3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64,900,000 | 194,700,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분양금액, 이하 같음)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등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단, 그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 및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4 | 4 | 3 | 3 | 2 | 1 | 17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1 | 1 | 1 | - | 4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 1 | 1 | 1 | 1 | 6 |
| | 중소기업 근로자 | 3 | 2 | 2 | 2 | 1 | 1 | 11 |
| | 장애인 | 부산 | 2 | 2 | 2 | 2 | 2 | 2 |
| 울산 | | 1 | - | 1 | - | - | - | 2 |
| 경남 | | 1 | - | 1 | - | - | - | 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13 | 9 | 11 | 9 | 7 | 5 | 54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26 | 17 | 21 | 19 | 15 | 10 | 108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3 | 3 | 3 | 3 | 2 | 2 | 16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13 | 9 | 11 | 9 | 7 | 5 | 54 |
| 합 계 | | 68 | 47 | 57 | 49 | 38 | 27 | 28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약신청자 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다.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구 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 제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0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 7,450,721원 | 7,200,810원~ 8,640,971원 | 7,326,073원~ 8,791,286원 | 7,779,826원~ 9,335,790원 | 8,233,579원~ 9,880,294원 | 8,687,332원~ 10,424,797원 | |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 8,692,508원 | 7,200,810원~ 10,081,133원 | 7,326,073원~ 10,256,501원 | 7,779,826원~ 10,891,755원 | 8,233,579원~ 11,527,009원 | 8,687,332원~ 12,162,263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 9,934,294원 | 8,640,972원~ 11,521,294원 | 8,791,287원~ 11,721,715원 | 9,335,791원~ 12,447,720원 | 9,880,295원~ 13,173,725원 | 10,424,798원~ 13,899,730원 |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6호(2021.11.16.)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로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 ~9,934,294원 | 9,361,053원 ~11,521,294원 | 9,523,895원 ~11,721,715원 | 10,113,774원 ~12,447,720원 | 10,703,652원 ~13,173,725원 | 11,293,531원 ~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5호(2021.11.16.)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름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p>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합니다.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시 2018.12.11. 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시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9호 제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봄)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견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향후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청약(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현장접수의 경우 제출 및 작성한 서류)한 내용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센텀 아스트림 SK VIEW' 견본주택에 우선으로(T.051-784-8801)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미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 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이상(2021.04.2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가점점수 입력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일 (2018.12.11.)이후 계약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2021.04.21.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는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신청시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 | |
|----------------------|---|
| |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청약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위반시 부적격 처리됨)

■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p>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부산광역시 1년미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p>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 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준용함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 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셋플 아스트림 SK VIEW' 견본주택에 유선으로(T.051-784-8801)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 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 대상자 | | 거주구분 | 신청 일자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2022.05.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센텀 아스트룸 SK VIEW 견본주택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2021.04.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2022.05.03.(화) (09:00~17: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 | | 기타지역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2022.05.04.(수) (09:00~17:30) | | |
| | 2순위 | 해당지역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2021.04.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 2022.05.06.(금) (09:00~17:30) | | |
| | | 기타지역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접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청약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구분 | 서류 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 ○ |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기본주택 비치] ※ 청약흡으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발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 | | |
|-----------------|---|-------------------------|-------------|--|
| | ○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제외)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의 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접수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3세대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자녀 | •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자녀가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및 생년월일 표시로 발급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 | | | | |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련 증명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中 소득이 없는 자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 존·비속 |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세대주이외어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여부 확인 |
| | | ○ | | 자녀 |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
| | | ○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미혼인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혼인 중인지 여부를 판단 |
| | | ○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中 소득이 없는 자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 ○ | 위임장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제출 | • 세무서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 날인 불필요)

※ 소득세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및 생년월일이 모두 표시되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
| | 추가 (해당자) |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www.wetax.go.kr) |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청약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검색대상 : 청약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정당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5.12.(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5.14.(토) ~ 2022.05.19.(목) 10:00~17:00 장소 : 센텀 아스트룸 SK VIEW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5.24.(화) ~ 2022.05.29.(일) 10:00~17:00 장소 : 센텀 아스트룸 SK VIEW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 2순위 |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부적격 사유가 없는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계약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기간에 당첨자적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을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1차 계약금을 전부 납부하고, '계약 시 구비서류' 및 추가사항(전자수입인지 등)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순번에 해당하는 예비순번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되는 예비입주자에게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는 당첨자 계약체결 시 적격여부 확인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라며, 또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 기간에 미참석 시 당첨자 또는 부적격자로 관리될 수 있으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계좌 부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준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2.05.12.(목) ~ 2022.05.21.(토)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05.1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
|--------------|--|---------------|--------|--|
| 일반공급 | ○ |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그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자녀 |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자녀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비속 | • 가점제 당첨자는 필수 제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 ○ | 기존1주택 처분서약 자료 | 해당주택 | • 처분서약한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
|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 위임장 |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용도 :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서명 또는 날인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1.)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 ○ |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 •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본인 |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150,000원) 1매 |
| | ○ |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도 가능, 대리인 위임 불가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총 실제거래가격(㉠번) 항목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함 |
|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 ○ | | 위임장 | -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 ○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용(개인정보수집안내) |

※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고 당첨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1.)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및 부적격 관련 해당 서류” 제출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를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or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가 당첨자격의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서류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등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 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SC제일은행 | 293-20-013823 | 반여1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센터 차원에서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분양대금 전액이 상기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 예시 : [예 :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분양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최소 1개월의 환불기간이 소요됨. 해당 기간 동안의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개시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해 주며,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자후불제**). 또한, 입주지정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이자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전이라도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정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 납부금액 및 일정 | |
|-----|--|------------|-----------|------------|
| | | | 계약금(10%) | 잔금(90%) |
| | | | 계약시 | 입주지정기간 |
| 59A | 유리난간 매립형 시스템창(거실 이중창), 유리난간 매립형 창(발코니1 단창) [침실1 앞 및 일부 발코니는 확장 제외] | 16,500,000 | 1,650,000 | 14,850,000 |
| 59B | | 17,100,000 | 1,710,000 | 15,390,000 |
| 74A | | 18,900,000 | 1,890,000 | 17,010,000 |
| 74B | | 19,400,000 | 1,940,000 | 17,460,000 |
| 84A | | 21,600,000 | 2,160,000 | 19,440,000 |
| 84B | | 21,800,000 | 2,180,000 | 19,620,000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231-910039-85304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 상기 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시 예시 : [예 :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창호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확장형 세대와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전기오븐과 전동빨래건조대는**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되며,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함.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배관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 | | 공급금액 | |
|----------|-----|------|---------------------------|------|-----------|------------------|
| | 구분 | 제조사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선택1(냉방전용) | 선택2(냉방전용+공기청정기능) |
| 59A, 59B | 선택1 | LG전자 | 거실+침실1(안방) | 2 | 3,670,000 | 4,170,000 |
| | 선택2 | | 거실+침실1(안방)+침실2 | 3 | 4,650,000 | 5,400,000 |
| | 선택3 |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4 | 6,000,000 | 7,000,000 |
| 74A, 74B | 선택1 | | 거실+침실1(안방) | 2 | 3,830,000 | 4,330,000 |
| | 선택2 | | 거실+침실1(안방)+침실2 | 3 | 4,800,000 | 5,550,000 |
| | 선택3 | |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4 | 6,300,000 | 7,300,000 |
| 84A, 84B | 선택1 | | 거실+주방+침실1(안방) | 3 | 5,000,000 | 5,750,000 |
| | 선택2 | |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 | 4 | 6,300,000 | 7,300,000 |
| | 선택3 | |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 | 7,900,000 | 9,150,000 |
| 84B | 선택4 | |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 6 | 8,700,000 | 10,200,000 |

2)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 공급금액 | 비고 |
|-----|--------|----------|-----------|----|
| 전타입 | 중문(수동) | 슬라이딩 3연동 | 1,400,000 | |

3) 개별옵션 및 고급화 품목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기본마감 | 옵션 | 공급금액 | | | | | |
|-----------|---------------------|---|---|-----------|-----------|-----------|-----------|-----------|-----------|
| | | |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 개별옵션 | 홈네트워크 월패드 | 코맥스 / 10인치 월패드 | 코맥스 / 13인치 월패드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주방TV | 동영미디어 / 10인치 주방TV | 동영미디어 / 13인치 스마트 주방TV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식기세척기(12인용) | - | SK매직 / 국산 12인용 | 1,050,000 | 1,050,000 | 1,050,000 | 1,050,000 | 1,050,000 | 1,050,000 |
| | 쿡탑 | 4구 가스쿡탑 | SK매직/ 국산 3구 인덕션 | 830,000 | 830,000 | 830,000 | 830,000 | 830,000 | 830,000 |
|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 | LG전자 / Objet 컴버터블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키큰장 | 5,500,000 | 5,500,000 | 5,500,000 | 5,500,000 | 5,500,000 | 5,500,000 |
| 드레스룸 고급화 | 일반형 시스템가구 | 고급형 시스템 선반(높이조절형 벽판넬/조명/수납특화ACC포함) +파우더 인조대리석 상판+AL 슬라이딩 도어+의류관리기(삼성전자 비스포크) 천장형 제습기 (84A, 84B만 적용) | X | X | 3,050,000 | 3,050,000 | 5,000,000 | 4,450,000 | |
| 바닥 마감 고급화 | 아시아산 타일(현관)+강마루(전실) | Italy 포세린 타일(현관)+Italy 포세린 타일 (복도/거실/주방) | 1,100,000 | X | 1,500,000 | X | X | X | |
| | | Italy 포세린 타일(현관)+Italy 포세린 타일 (복도/거실/주방/팬트리) | X | 1,200,000 | X | 1,600,000 | X | X | |
| | | Italy 포세린 타일(현관,현관창고)+Italy 포세린타일(복도/거실/주방/팬트리) | X | X | X | X | 1,600,000 | X | |
| | | Italy 포세린 타일(현관,현관창고)+Italy 포세린 타일 (복도/거실/주방) | X | X | X | X | X | 1,600,000 | |
| 벽면 마감 고급화 | 현관 / 복도 | 실크벽지 | 시트판넬 / 가구판넬 | 7,700,000 | 7,700,000 | 8,600,000 | 8,600,000 | 9,000,000 | 9,000,000 |
| | 거실아트월 / 복도아트월 |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 실크벽지 | 거실 아트월 : Italy 대형 세라믹 타일/ 복도 : 시트판넬 or 가구 판넬 | | | | | | |
| | 거실 창측 | 실크벽지 | 시트판넬 | | | | | | |
| | 거실 후면 | 실크벽지 | 시트판넬 | | | | | | |
| | 식당 1면 | 실크벽지 | Italy 대형 세라믹 타일 (59B 제외) | | | | | | |
| | 기타 | - | 픽처레일 | | | | | | |
| 주방 고급화 | 주방가구 | 국산주방가구 | 국산 주방가구+상부장 글라스 도어 마감 상부장 플랩도어(84A, 84B만 적용)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8,000,000 | 8,000,000 |
| | 싱크볼 | 국산 대형싱크볼 | 국산 대형 사각싱크볼 | | | | | | |
| | 주방수전 | 국산 | 외산 터치센서수전 | | | | | | |
| | 주방 후드 | 국산 침니형 | 국산 아일랜드형 후드 | | | | | | |
| | 액세서리 | - | 국산 미드웨이 선반 액세서리+아일랜드 매입 콘센트 | | | | | | |
| | 주방 상판/벽 | MMA 상판+국산 타일벽 | Italy Big Slab 타일 | | | | | | |
| 욕실 고급화 | 타일 | 국산타일 바닥/벽 | Italy 포세린타일 (600*600) | 3,900,000 | 3,900,000 | 4,200,000 | 4,200,000 | 5,200,000 | 5,200,000 |
| | 도기 | 국산일반형양변기(욕실1) / 국산일반형양변기+비데(욕실2) | 국산 비데일체형 양변기(공통) | | | | | | |
| | | 국산일반형세면대 | 탑카운터형 세면대(욕실2) (84A, 84B만 적용) | | | | | | |
| | 수전 | 국산일반형 | 외산 수전 | | | | | | |
| | 욕조 에이프론(욕실1) | 세라믹 욕조 | 엔지니어드스톤 | | | | | | |
| 기타 | - | 욕실장 하부 센서등 | | | | | | | |
| 조명 고급화 | 거실 | 일반 직부등+우물천장 | 일반 직부등+우물천장 및 복도 간접조명 | X | X | X | X | 1,600,000 | 1,600,000 |
| | 주방 | 일반 식탁 직부등 | 일반 식탁 직부등+우물천장 간접조명 | 1,200,000 | X | 1,400,000 | X | | |
| | 거실+주방 | 일반 직부등+일반 식탁직부등+우물천장 | 일반 직부등+일반 식탁직부등+우물천장 간접조명 | X | 1,200,000 | X | 1,400,000 | X | X |

4)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은 추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로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 304호 김유신 → '01020304 김유신']
- 추가 선택품목 대금(옵선대금, 이하 같음)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유상옵선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 옵션대금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음.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내 용 |
|------------|---|
| 공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 및 납부계좌가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행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선택 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선택 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매립냉매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른 실 이외의 별도의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 현관중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옵션 선택 시 신발장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디딤판 사이즈의 폭과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평면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공사시 세부 디테일 및 형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방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현관 중문은 세대 내 공간 분리를 위한 문으로 단열, 차음, 기밀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임 |
| 개별 옵션 및 고급화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인치 월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13인치 스마트 주방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 상부장 개폐와 주방TV가 간섭되어 개폐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주방가구 옵션에 따라 주방TV 설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단종 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식기세척기(12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주방가구가 설치됨.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쿡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옵션 미선택 시 4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쿡탑설치 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음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선택 시 제공되는 제품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옵션 선택 시 상부수납가구/ 키큰장(내부 서랍 ACC,콘센트)를 포함하여 제공됨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키큰장 가구는 타입에 따라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됨. 옵션 선택으로 제품설치시, 제품 바닥 및 후면에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일반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냉장고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며, 후면 벽지, 바닥은 마루가 시공됨 제품의 크기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제품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옵션 선택 시 가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수납공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드레스룸 고급화는 74,84타입 적용가능하나, 59타입은 미제공됨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벽지,일반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가구가 시공됨 타입에 따라 가구의 길이와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가구 수납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사이즈 등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소방감지기 및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의 배치 및 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84타입만 적용됨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84타입만 적용되는 상품이며,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해당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의류관리기의 경우 도어는 일방향(손잡이:우/ 힌지:좌)으로 선택변경이 불가함 의류관리기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관리기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 의류관리기 해당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84A,B타입의 경우 욕실특화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도어 위치가 달라지므로 본공사시 제공 품목 수량 및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AL 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시 세부 디테일 및 형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 구조 및 드레스룸 크기에 따라 도어 형태 및 크기,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AL 슬라이딩 도어는 공간 분리를 위한 문으로 단열, 차음, 기밀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임 |
| 바닥 마감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 벽면 마감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타일/그외 공간은 벽지로 시공됨 •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픽처레일은 평형별로 적용수량이 상이함 |
| 주방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옵션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 가능함 • 주방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로 시공되며 여닫이장 / pet 도어로 제공됨 - 해당 옵션 선택 시 글라스 플랩장, 여닫이장(마감, 색상 변경) + 미드웨이 선반이 설치되며 평면 컨디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형태, 구성 및 액세서리 적용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음 (59타입의 경우 평면상의 이유로 플랩장이 아닌 여닫이 형태로 제공됨) - 옵션시 제공되는 약세서리 및 서랍재, 미드웨이, 무선충전콘센트, 상부장조명, 싱크볼 등은 본공사시 형태 및 제조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타입에 따라 가구의 길이와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수납성 및 품질개선 등의 사유로 하드웨어 사양, 마감재질, 내부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시 제공되는 아일랜드형 후드의 경우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후드 제품 무상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됨 - 후드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주방벽체는 타일,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면적이 상이함 - 해당 옵션 선택시 마감두께 변경에 따라 주방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대형타일 나누기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 욕실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 특화 선택시 공용욕실, 부부욕실 모두 적용기준이며, 부분 선택할 수 없음. • 타일의 설치 나누기 및 기기류의 배치는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타일의 경우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벽,바닥 타일은 국산타일이 시공되며, 벽체타일 사이즈가 축소됨 • 해당옵션 미선택시, 욕조의 측면은 욕조 동일소재로 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옵션 미선택시, 욕실 상부장 하부에 설치되는 등기구와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별치형 센서는 제공되지 않음 - 해당 옵션 선택에 따라, 부부욕실 욕실폰의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옵션 선택에 따라, 부부욕실 휴지걸이의 설치위치와 타입이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중 도기류의 설치위치와 수건걸이 등의 액세서리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유상옵션 품목의 타입별 상세 구성은 마감자재안을 참조 바람이며 품목은 세면대, 세면기수전, 욕조수전, 샤워수전, 비데일체형양변기, 코너선반, 수건걸이, 휴지걸이임.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선택 시 기본품목의 설치 위치는 유상옵션 품목 설치 위치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제품 단종 시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시공됨 • 상부장 하부 센서조명의 설치방식 및 하부 타공 수량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부부욕실 카운터형 옵션은 84A, 84B타입만 제공되며 욕실 도어의 위치와 열림 방향이 변경됨. |
| 조명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음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음 • 해당 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음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는 평형별로 사이즈가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 |

■ 기본 선택품목(무상옵션)

| | | | |
|-----|----------|------------------|-----------|
| 주택형 | 위치 | 인테리어 스타일(마감재 컬러) | |
| 전타입 | 현관/거실/주방 | G-Edition | W-Edition |

- 당 현장은 현관/거실/주방의 인테리어 스타일(마감재, 컬러) 무상 선택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분양, 고객의 미회신등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 건립타입의 적용 마감재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함
- 해당 옵션 미선택시 59A, 59B, 74A, 74B는 G-Edition을 적용하며, 84A, 84B는 W-Edition을 적용하여 시공됨

Ⅶ

유의 사항

※ 아래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유의사항

| 구 분 | 내 용 |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전 최종 사업시행인가 설계도서의 평면도, 배치도 및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행자" 또는 "감리자"의 요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 •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되, 추후 확정측량에 의거 대지면적 변경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비는 단지별로 각각 또는 통합 산정될 수 있으며, 실입주 후 또는 입주하지 않고 입주시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입주 후 입주관리를 위한 하자관리 사무실은 조합의 승인 후 설치할 수 있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 등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도서에서 제외된 "시행자" 발주의 별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무관함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대유행,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폭동 및 파업, 기반시설공사 지연, 건설업 전반의 급격한 시황변동(원자재 가격 폭등, 자재공급 중단 등), 추가공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입주 지연 시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입주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나 입주시정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공용)보차도는 준공 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없이 계획되었으며 단지 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시행자"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시행자"가 "조합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칭)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 하기로 함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의 초등학생들은 무정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14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일반학교(1학교)내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학생 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자"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자"의 결정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주동, 부대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보행로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레이아웃,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명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가스정압기, 한전패드, 포장, D/A(환기구), 천창(탑라이트),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

| | |
|--------------|--|
| | <p>소방차전용구역,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조경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p> <p>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p> |
|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에 오래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시간 경과 시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워 미세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시행자”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의 결정에 따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및 시트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및 시트 두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및 색상은 본공사 시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원목마루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웅이와 워터마크 등이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및 외부시설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과 설명을 참고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 바람 |
| 건본주택/ 홍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모델하우스,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모형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시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건립세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무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건본주택에 들어가는 전시품에는 가구 및 조명과 함께 전시조명에 들어가는 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원은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음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공용로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건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홈 네트워크 기기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및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건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므로 기본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가구배치 및 지급여부가 다르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조건을 확인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 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가능함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건본주택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모형, CG와 건본주택 시공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함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VR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유·무상옵션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계약시 해당제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 구 분 | 내 용 |
|------|--|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 단지 평형타입별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공용면적은 평형 타입별 벽체공용면적을 반영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단지 내외부 도로(차도 및 보도)의 폭과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수목 및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임대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상가는 대지가 별도로 구획되지 않고 공동주택과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며, 상가 주차장은 각 상가의 전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별도로 진출입하도록 계획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 및 코아별로 편차가 있을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 •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및 추가 커트월록 등이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근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정비계획(단지 남북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보행통로는 막을 수 없음. • 단지 Set-Back 구간에 설치되는 버스베이 및 보도 등은 반여1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공동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상시 제공하고, 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에 대하여는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운대구(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이관하여야 함. •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 일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용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어린이집, 도로,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 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차량전조등,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사 대안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과 CG 및 배치도 등에 표현된 규모 및 위치 등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운영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오니, 사전에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동은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 상가, 문주, 승강기실, 계단실, 옹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주민공동시설 등)의 배기구, 환기구 및 보일러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개소,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재활용폐기물보관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열교환실, 실외기실,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다음 동 주변은 발전기 가동 시 소음, 진동, 매연등의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음 [106동 (인근동 포함)]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의 실외기가 동 인근(조경공간 또는 부대시설 상부 등)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상가포함) 지붕에는 옥상조경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동에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및 보안상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난간턱 높이, 난간 형태 및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모든 급배기구(주차장 환기용, 지하 부대복리시설용, 제연용)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주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됨(21년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 기준) 101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5호세대 17인승 2대, 102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03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5호세대 17인승 2대, 104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2대, 5~6호세대 17인승 1대, 105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06동 1~4호세대 17인승 2대, 107동 1~2호세대 17인승 1대, 3~4호세대 17인승 1대, 108동 1~3호세대 17인승 1대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제공되는 창호가 유리난간 매립형 창호 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므로 입주 및 이사 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 • 레벨차이로 인해 주동지하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저층부 석재마감과 다른 마감이 적용될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크기가 기준층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붕구조물은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설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시설물 중 방송안테나와 태양광 집광판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음 (단, 옥탑 및 지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우편함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디자인, 마감 계획(마감재, 색상), 천장고 등은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입면 및 동출입구 등 주동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자”의 설계변경에 따라 커튼월록, 문주 특화 디자인, 측벽 특화, 저층부 석재, 동출입구 등이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명계획 시 인근세대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각 동 1층 필로티 또는 1층 인근에는 제연휀룸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옥상 난간대 등을 포함한 각종 옥상 시설물에 대해 강풍발생시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층에 지하층(지하주차장) 이동통신 및 커뮤니티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단지계획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 부대 복리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일부 동의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및 마감재, 위치, 규모 등은 “시행자”의 요청으로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 및 기능, 구조, 성능 개선, 배관간섭 등으로 인해 평면 레이아웃, 각 실의 기능, 입면, 단면, 천장고,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및 유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및 출입구 등 부대복리시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도서, 건본주택,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단, 가구/기기류는 불박이형 가구 및 운동기기만 제공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상부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하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 지하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계단실과 지하주차장이 접하는 개소 수는 각 세대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또는 PVC재질 판넬 등 적절한 성능의 재료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동별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고,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으로 각 동의 지하1층 동출입구 주변에 설치예정이며, 택배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 기준이며, 동별-코아별로 무인택배함에 접근성이 상이함 • 동의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차량통과 등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PC공법 적용 범위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C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소화전 등의 시설물에 의해 주차 후 차량의 문 개폐 시 간섭 등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에 설치되는 차량 경사로의 길이와 폭 등은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행자”의 인허가 결과에 따름 • 트랜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 폭을 포함하며, 본 공사시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되는 구간은 주차라인을 마킹하지 않음 •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01동 1,2호라인은 지하1층 주차장 내부에서 엘리베이터홀로 진입 불가함 |
| 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및 의자, 테이블 등 가구류는 입주개시 후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며 임의 이동이 불가함 •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 등)이 조성 예정이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외부 시설물의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헬싱정원/ 스포츠정원),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구간-면적-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의 옥상에 녹화 및 조경시설은 실시공 시 설치유무 및 위치와 면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1, 근린생활시설 3, 근린생활시설 4 상부의 녹지구간은 하중의 문제로 수목 식재 불가 또는 최소화하여 식재될 예정임 • 공사 중 해당 소방서 및 관할 인허가청의 요청으로 소방차 주차구획 구간 주변에는 식재가 삭제 및 변경 될 수 있음 |
| 주출입구/ 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출입구(문주), 보행자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측량결과 등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및 경비실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상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되어있지 않음(상가의 진입구와 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외 별도로 계획됨) •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2동, 107동, 108동] • 단지내 상가의 창호, 외부입면,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 및 출입구 등 상가 외관의 차별화 디자인(형태, 색채, 줄눈, 마감재, 조명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전면부 보도의 대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램프/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상가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및 관련 시공물 변경 또는 살수장에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에 맞게 재시공 및 추가공사는 원인가가 부담하여야 함 |
| 단위 세대 관련 | 일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 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 이웃 세대(좌우/상하부) 확장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골조, 조적, 건식벽체 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설치 위치, 폭, 높이, 형태, 열림방향,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 및 유리 색상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 세대의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카탈로그 또는 견본주택과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욕실, 발코니 등과 실내의 바닥 단차 치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장, 등박스, 커튼박스 위치, 크기,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벽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욕실거울, 욕조, 워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실 샤워부스 및 도기 하부 등 일부 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일부 단위 세대내 공사용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내부 마감재 설치 전 폐쇄됨 • 침실 등 난방 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재질은 결로, 단열 등에 대한 성능 향상 등을 사유로 본 공사시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천장 속에 설치되는 설비, 골조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실 시공 시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해당 세대 내부 확장 여부와 주동의 조합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기둥 일부가 돌출되고 마감 및 드레스룸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안방을 포함한 세대 침실 및 욕실문의 도어록 사양은 키가 없는 Type임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 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로 가전 제품 구매 후 설치 시 설치 전 세대 내부 설치 공간 확보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석재 및 타일, 시트판넬의 나누기는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음 • 주방창호 사이즈와 형태에 따라 커튼박스 유무와 사이즈, 가구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드레스룸 가구, 주방가구 및 발코니 선반의 길이 및 구성,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복도 및 거실 아트월 설치 여부 및 위치는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 위치는 모형을 참조하기 바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신발장 구성 및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현관문은 방화 성능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세대별 옵션은 확장 기준으로 작성되어 비확장 시 제공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타입, 평면별로 제공 유무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벽지, 마루, 타일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모형과 CG에 표현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과 재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세대 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세탁실 선반과 간섭되어 선반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침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시 타입별 평면 선택형 옵션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위치 및 개소, 등기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NUGU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smart home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주동의 일부 세대는 대피공간 발코니 없이 세대간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설치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현관/거실/주방의 인테리어 스타일(마감재,컬러) 무상 선택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분양, 고객의 미회신 등으로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 건립타입의 적용 마감재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함 - G-Edition : 59A(건립), 59B, 74A, 74B - W-Edition : 84A(건립), 84B • 인테리어스타일 선택형은 부분 교차선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적용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발코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발코니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 •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 설치 부분의 난간턱, 수벽의 높이 및 그릴의 재질, 사양 및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내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선홍통, 환기구, 바닥단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세대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으로의 출입문은 전층 방화성능이 없는 철제문이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입면계획에 따른 장식물 또는 구조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현장시공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안방앞 발코니는 법규에 맞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발코니 천정 높이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임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 창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 마감재의 변경에 따라 세대 창호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재질, 크기, 색상, 난간대 재질/높이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8조 4항(‘21.1.12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세대별 국기봉 꽃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봉 꽃이 장치는 각 동 출입구에 1개소 씩 설치 예정임. 단,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현관문의 열림방향 이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견본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동등사양의 창호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설치 창호의 경우 세대와 인접 시 망임유리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거나 고정형 창호로 설치됨 • 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고, 환기를 위해 코야별로 창호 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단실 최상층에는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음 |
| 전기/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공간/ 발코니내에 완강기 등의 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은 침실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차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탁기, 건조기 등 입주자의 물품 배치에 따라 보일러 점검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 등을 이동해야 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 1,2층(필로티포함) 의 창호 외부에는 방범용 적외선 감지기 설치됨 • 식탁등의 경우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위치변경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NUGU Smart Home (SKT Smart Home)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NUGU Smart Home과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SK smart home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 및 비확장, 옵션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전기 배관/배선은 이중천장 내 노출 시공됨 • 전기쿱탑, 전기레인지틀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쿱탑, 전기레인지틀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 “시행자”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옥상에 경관조명 위치, 개소,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홈네트워크 건물 AA등급임)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세대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위생기구류(수전, 도기 등),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기타 마감자재(에어컨, 보일러, 쿡탑, 가스미터기 및 배관, 배수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점검구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항에는 양변기 주위에 바닥 배수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유상웬션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은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델이며, 해당 모델 단종시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됨. 또한, 에어컨(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은 세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TV폰 후면에 주방 TV폰 전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시공 됨
- 정보통신공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공동주택) 1등급 수준으로 시공되며, 홈네트워크 공사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AA등급 수준으로 시공됨 (별도의 인증은 없음)
- 견본주택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에 의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실 배기는 외부 직배기방식이며, 배기팬은 고정압 정풍량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임대세대는 배기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됨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변경 및 대피공간 내 천정마감, 발코니 창호 높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시 각 세대 내부에는 소방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장비가 설치됨
- 수도법에 따른 절수등급 의무화 설비위생기구류(일부 수전/양변기)에 대하여 기준등급의 시험수압 및 수량을 준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1층 및 필로티 세대 욕실 천정에는 급수급탕분배기가 2개 (상부세대 & 해당세대)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Ⅷ

기타 사항

■ 입주 예정일 및 사전 점검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45일~75일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36, 37, 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3개소(체력단련시설 2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구획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 2.3m |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

■ 내진설계

-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69g임 (VII-0.169g)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12022-101-0001600호 | 199,880,80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흙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항)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방습층 설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항)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 | |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
| |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 적용 |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항)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고효율변압기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따름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개정 시행일(2020.01.01.)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이 아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 | 전기 | 소방/정보통신 |
|------|------------------|--------------|--------------|
| 회사명 |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현대이엔지 | 대원포비스(주) |
| 감리금액 | 2,408,114,060원 | 470,875,300원 | 583,000,000원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시행자) | 시공회사(시공자) |
|---|--|
| 반여1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181171-0004839)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38805)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센텀 아스트롬 SK VIEW 홈페이지(<https://www.ca-sk.co.kr>)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

■ 분양문의 : 051-784-880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센텀 아스트롬 SK VIEW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자재상의 오류가 있을 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